

	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0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연구실 책임교수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, 연구활동종사자 등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
2. 안전점검계획의 수립
3.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
4. 안전관련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
5. 연구실안전관리계획의 심의
6.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